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1995년 5월 일

제출자: 제천시장

의안번호 156

1. 제안이유

'95. 1. 3 제정된 제천시세조례 내용중 '94. 12월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개정과 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일부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자함.

2. 주요골자

가. 주민세 균등할 개인세율 및 법인구분 범위 조정

- 개인균등할 세율을 '94. 12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동지역 1,500원을 1,800원, 읍·면지역 800원을 1,000원으로 상향조정.
- 법인 구분을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한 구분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나. 주민세 납기등 규정 삭제

- 주민세 균등할 납기 및 징수 방법을 지방세법 제 175조에 규정함으로써 중복 삭제

다.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삭제

- '94.12월 지방세법 개정시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건설기계를 제외함으로써 건설기계 신고의무 규정 삭제

3. 근거법령

- 지방세법

첨부 : 1.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근거법령 1부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조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특별징수 의무자가' 와 '지방세법시행령' 사이에 '법 제26조의2 및'을 삽입하고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하고, '납기한의'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로 하고,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납기한'을 '다시'로 하며, 동조제5항중 '납기한의'를 '신고납부기한의'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구분란 및 세율란을 '동지역1,500원을 1,800원'으로 하고 '읍.면지역 800원을 1,000원'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 구분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시내의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한다)의 종업원(법 제23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시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시내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로, '시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시내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로 하며, '시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조제목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에'로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6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법 제266조제3항및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를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제202조제1항의'를 '법 제9조의2의'로 한다.

제32조는 삭제한다.

제49조중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 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를 '법 제234조의12의'로하고 동조 본문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한다.

제53조의 조제목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4조 제1항중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를 '법제238조의2, 법제279조, 법제290조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조제목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며, '서류를 갖추어' 다음에 '시장에게'를 삽입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u>납기한의 연장</u>) ①납세의무자 또는 <u>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u>(이하 '영'이라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납입기한의 연장을</u>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u>납기한까지</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납기한의 연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u> 정하여 그 납부 또는 <u>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납기한의 연장을</u> 받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u>납기한의 연장을</u>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u>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p>	<p>제7조(<u>천재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u>) ①- ---<u>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u>- <u>기한의</u>- ----- ----- <u>기한이 만료되기 전</u>- ②-----<u>기한의</u>- <u>기한이 만료된 날의</u>- ----- -----<u>연장할 수 있다.</u> ③-----<u>기한의</u>- -----<u>기한의</u>- ----- -----<u>연장된</u> <u>기한내에</u>- -----</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납기한</u>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생략)</p> <p>⑤<u>납기한</u>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u>가산금</u>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 부터 징수한다.</p> <p>제15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동 지 역</td><td>1,500원</td></tr> <tr> <td>읍·면 지 역</td><td>800원</td></tr> </tbody> </table> <p>2. 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 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내의 종업원(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td><td>500,000 원</td></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동 지 역	1,500원	읍·면 지 역	800원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 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내의 종업원(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	500,000 원	<p>-----</p> <p>-----<u>다시</u>-----</p> <p>④(현행과 같음)</p> <p>⑤<u>신고납부 기한</u>의-----</p> <p>---<u>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될 때</u> <u>부터 적용한다.</u></p> <p>제15조(세율)-----</p> <p>-----</p> <p>1. 개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동 지 역</td><td>1,800원</td></tr> <tr> <td>읍·면 지 역</td><td>1,000원</td></tr> </tbody> </table> <p>2. 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分</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u>과세기준일 현재의 자</u> <u>본금액</u> ----- ----- ----- ----- <u>과세기준일 현재 당해</u> <u>사무소 또는 사업소(이</u> <u>하 이조에서 '사무소등'</u> <u>이라한다)의 종업원(법</u></td><td>500,000 원</td></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동 지 역	1,800원	읍·면 지 역	1,000원	구 分	세 율	<u>과세기준일 현재의 자</u> <u>본금액</u> ----- ----- ----- ----- <u>과세기준일 현재 당해</u> <u>사무소 또는 사업소(이</u> <u>하 이조에서 '사무소등'</u> <u>이라한다)의 종업원(법</u>	500,000 원
구 분	세 율																				
동 지 역	1,500원																				
읍·면 지 역	800원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 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내의 종업원(대통령령 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	500,000 원																				
구 분	세 율																				
동 지 역	1,800원																				
읍·면 지 역	1,000원																				
구 分	세 율																				
<u>과세기준일 현재의 자</u> <u>본금액</u> ----- ----- ----- ----- <u>과세기준일 현재 당해</u> <u>사무소 또는 사업소(이</u> <u>하 이조에서 '사무소등'</u> <u>이라한다)의 종업원(법</u>	500,000 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과 하는 사무소 또는 사 업소를 둔 법인</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u>시내의 종업</u> <u>원수가 100인을 초과하</u> 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를 둔 법인</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초과하는 법인 으로서 <u>시내의 종업원수</u> <u>가100인이하인 사무소또</u> 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인 법인으로서 <u>시내의</u> <u>종업원수가 100인을 초</u> <u>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u> <u>사업소를 둔 법인</u></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u>시내의 종업</u> <u>원수가 100인이하인 사</u> <u>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u></p>	<p>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 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p> <p>----- 350,000 원</p> <p>-----</p> <p>----- <u>과세기준일 현재 당</u> 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 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p> <p>----- 200,000 원</p> <p>-----</p> <p>--- <u>과세기준일 현재 당해</u>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p> <p>-----</p> <p>-----</p> <p>----- <u>과세기준</u> 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 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p> <p>----- 100,000 원</p> <p>-----</p> <p>----- <u>과세기준일</u>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시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u></p>	<p><u>법인과 ----- 과세</u></p>
<p><u>기타법인</u></p>	<p><u>기준일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u></p>
<p><u>50,000 원</u></p>	<p><u>50,000 원</u></p>
<p>②(생략)</p> <p>제16조(납기등) ①주민세균동할의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수시 부과한다.</p> <p>②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p>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법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p>	<p>②(현행과 같음)</p> <p>< 삭 제 ></p> <p>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 각호에-----</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 삭 제 ></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u></p> <p><u>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u></p> <p>제19조(구판사업동 건축물에 대한 경감) <u>①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판 사업동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 --- 4. (생략)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75로 한다.</u></p>	<p><u>5.-----</u> <u>-----</u></p> <p><u>6.-----</u> <u>-----</u></p> <p>제19조(구판사업동 건축물에 대한 경감) <u>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 사업용동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하다.</u> 1. --- 4. (현행과 같음) <u>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u></p>
<p>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p>
<p>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명칭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삭 제 ></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5. (생략)	
제31조(천재동으로 인한 감면신청) <u>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자의 소재지, 지번, 지역,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31조(천재동으로 인한 감면신청) <u>법 제9조의2의</u>
제32조(중군자동의 감면신청) ① <u>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중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② <u>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u>	< 삭 제>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u>법 제234조의 14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u>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u>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u>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 4. (생략) < 신설 ></p> <p>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p> <p>①(생략)</p> <p>②법 제234조의12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u>비과세 또는 감면</u>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u>비과세 또는 감면</u>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p> <p>법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u>비과세 또는 감면</u>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p> <p>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u>비과세</u>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u>비과세</u> 받을 자유가 없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p> <p>①(현행과 같음)</p> <p>②법제234조의 12의----- -----<u>비과세</u> ----- -----<u>비과세</u> ----- ----- ----- ----- ----- -----</p> <p>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u>비과세 받고자</u> ----- ----- ----- ----- ----- ----- -----</p> <p>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u>비과세 또는 감면</u>-----<u>비과세 또는 감면</u>-----</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 ----- ----- ----- ----- ----- ----- ----- ----- ----- -----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1조(납기) ①재산합의 납세의무자는 법제248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u></p>	<p><u>< 삭 제 ></u></p>
<p>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소세를 <u>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u>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u>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비과세 받고자----- -----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u></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u>제64조(과세대상지역)영 제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u></p>	<p><u>< 삭 제 ></u></p>